

제390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8월17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93)

상정된 안건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1) 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3) 1

(10시54분 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32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793)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배진교 위원 오늘 심사할 안건 두 건 관련해서 앞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안건 상정과 그다음에 소위에 회부할 때 안건 3개와 관련해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내용이 유

사하고 또 함께 심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병합 심사를 위해서 안건 상정을 했고 가결을 하고 그리고 회부를 했는데 지금 안건 2개만 놓고 안건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가결한 사항에 대한, 결정 사항에 대한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 상임위에서 상정했고 또 여야 간의 합의하에 이 2개의 안건만 다루기로 했다고 할지라도 상임위에서 상정한 안건이고 또 개별 국회의원마다 입법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국회운영위원회가 오히려 여야 간사 간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2개의 법만 다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심각한 훼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하겠다고 한 취지로 가결시키고 회부했던 법안도 함께 안건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바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추경호 수석님.

○추경호 위원 취지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당초에 여야 간사 간에 얘기를 나눈 것은 우선 8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시급한 내용, 그 법안 내용만 우선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운영개선소위는 앞으로 계속 소위로 넘어온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순서 조정상 그렇게 위원장께서 상정하신 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넘어온 안건들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도 계속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되고 우선 쉽게 당초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던 내용 중심으로 우선 1차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운영개선 소위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진교 위원** 양당 간사 간에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논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오늘 다루려고 하는 핵심적 내용과 같이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뤄서 나중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룰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재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미 소위에 회부되어 있거나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앓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첫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야 간에 첫 협의는 요약해서 일단 정리했다는 말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 말씀 취지 잘 반영을 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또 잘 심사되도록 위원장이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86조 3항의 현행 조항에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의 경우 법사위가 5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과 그리고 50일 경과 후 처음 개최되는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표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으로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한병도 의원안의 경우에는 체계·자구 심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자구 심사시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의 내용은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관련 원내대표 합의사항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도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법사위가 일정 기간 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보다 조속한 법률안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체계·자구 심사 범위의 제한사항입니다.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하여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 있는 심사 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제한할 경우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권을 존중하고 국회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칙 적용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추경호 의원안은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할것인지, 법 시행 이후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는 법률안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적용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이후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할 경우 적용례의 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 제2조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6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추경호 수석님.

○추경호 위원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건은 지난 7월에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님께서 중재해 주신 그 안을 토대로 합의했던 사안을 기초로 제가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 내용을 존중해서 오늘 법안 심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 대로 원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의미가 이 법 시행 후에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부터 그 기간을 적용한다 이런 취지로 했던 만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 그 내용대로 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한준호입니다.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병도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안을 보면 체계·자구 심사의 정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 신설을 포함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도 종전 회부되었던 법률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합

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통일적으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정의 규정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추경호 수석님.

○추경호 위원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용 그런 사항도 검토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7월 달에 의장님 주재로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거론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많은 논의, 대화 끝에 지난번 합의사항과 같은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그 이후의 사항은 계속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 관련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간에 대화, 논의가 있고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다음에 적용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도 60일 조항을 적용하자 하는 말씀인데 법사위에서 대단히 쟁점이 돼서 특별한 정치적 이유로 거기서 잡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법안들이 그동안 법사위에 제출된 많은 법안들 중에 순차적으로 법사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법안 심사에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후순위로 밀려서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120일에서 60일로 이렇게 정해 버리면 법사위에서 선의로, 그야말로 순서에 따라서 논의하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60일이 도파했다는 이유로 다시 상임위 재회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종의 소급적용, 소급입법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고 법사위에서 심사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상임위에 가는 그런 기형이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이 앞으로 이제 법사위에 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심사를 하자 이런 취지로 그 당시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60일로 하자, 그리고 법사위에 온

것 이제 이 법 시행되면 앞으로 이렇게 잘하자 이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아까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안들이 이미 소위에 회부가 돼 있고 그런데 이번 안은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20일을 60일로 단축한 문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를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사에 대해서 해서는 아니된다고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해 주시고, 이후에 이것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좀 심도 깊은 논의와 토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배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김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위원장님께서 여야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여야 합의가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양당 간의 합의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맞습니다.

○배진교 위원 다른 비교섭단체들과 합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동안 국회 운영 파행의 중심에는 법사위가 있었고 법사위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파행이 왔는지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역할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법안 키퍼 역할을 하면서 법사위의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당 원내교섭단체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양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단순하게, 미세조정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닌 단순하게 현재 국회 일정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상의 합의를 위한 이런 조정안은 사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법사위가 갖고 있는 권한,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논의를 하지 않는 이상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논의만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저희가 제출된 세 가지 법안을 계속 같이 심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오늘 여야가 아닌 양당 원내교섭단체 간의 합의된 안을 심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심사할 의미가 별로 없어서 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퇴장)

○소위원장 한병도 그리고 위원님, 여야가 아니고 원내교섭단체 합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일단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1년을 있으면서 최근에 여러 분의 여러 가지, 법사위원이 상원 노릇을 한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야당 법사위원장이 돼서 각 중요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게이트키퍼처럼 법안을 상당히 뒤로 미루고 했던, 그래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던 것의 대표적인 게 사실 박영선 위원장 시절에 그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사위원의, 법사위의 월권 논란도 있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발생하지 않고 외려 다수에 의한 일방적 법안 처리가 1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토론, 대화, 타협과 같은 그 정신이 완전히 무시되고 결국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무수한 법안들이 양산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 임대차 3법과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세 물량의 급감으로 전세가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또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치 그것이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상원 노릇의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일방 독주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60일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합의정신에 대해서는 저는 100% 존중을 합니다마는 120일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에 의해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면 보통 하루에 100건에서 120건을 저희가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위헌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형식적이게 되고 어찌 보면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이 마치 국회의원의 검토의견처럼 되어 버리면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입법의 권한이 사실상 전문위원한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법률가로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 너무나 많은 입법이 생산되고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의 10건 이상이 위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법안 심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법률이라는 것은 한 번 입법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법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자칫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흉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에서의 입법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사실은 그 기능을 점점 줄이고 있는 그러한 입법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합의정신을 100% 존중하지만 제가 경험한 법사위에서의 법안 심사의 어떤 기능의 문제점 또 법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많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 첫 발언인데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작년 6월, 7월경 개정안을 낸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 국회법 개정안이, 특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것이 잘 통과되기를 바랐던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었는데 사실은 여기 법사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약간 피해를 본 게 아마 있

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낸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그때 전문위원이라든가 행정부에서도 다 합의가 된 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사위에서 고치고 나서 취지가 좀 이상하게 변경된 법안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만든 아이가 아닌 겁니다. 이상한 애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서 그 당시 속기록 영상을 보니까 법사위원님, 그때 야당 위원님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다가 야당 위원님 주장대로 법안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 아무리 살펴봐도 법조인인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아닌데 양심 거부 자유인가 그걸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상임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행정부 쪽에서 다 정말 일치되게 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자괴감이랄까요 피해의식이 좀 있고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두 간사님께서 대표로 법안을 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체계·자구 심사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 그다음에 체계·자구 심사 범위 제한한 것 이런 것이 있어도 사실은 법사위에서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를 건들려면 이것 가지고도 한참 또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한 위원님의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 무산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개정안의 취지를 법률안으로 담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 속기록이라든가 심사기록에 남겨서 법사위원님들이 이런 취지의 정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법사위원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법사위로 올라온 법들이 많아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이유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많은 법안들을 그 내용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또 바꿀 수 있다 아니면 그런 말씀으로…… 피해를 한번 입었던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예전에 변호사라든가 법조인이 많이 없어서 법사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논의를 해 주신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법조인들이 많고 또 전문위원실 또 행정부에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좀 존중하고 정말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의 심사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법 취지가 담기도록 강력하게 법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유없이’도 이유를 붙이려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골프 안 되는 날은 이유가 365가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따라 안 맞네 그러면서. 이유 붙이려면 다 붙여서 50일 또 120일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그 취지가 과연 반영이 된 것인가 그런 것까지 여기서는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 앞선 우려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들은 이후에 법안소위를 운영하면서 여야 위원님들의 아마 심도 있는 토의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20일을 60일로 줄이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부칙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견 주신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 이런 것들은 앞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 준 현	김 승 원	배 진 교	유 상 범
임 오 경	전 주 혜	추 경 호	한 병 도
한 준 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송	대	호
입 법 심 의 관	공	춘	택